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427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세일엠앤씨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27,084,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가. 주식회사 이스펙은 2011. 10. 12.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 산업단지 내 i34블럭 1롯트 토지(공장용지) 11,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매매대금 6,286,698,900원을 2년 이상에 걸쳐 6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연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이스펙을 흡수합병하고, 2014. 1. 24. 부산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한 다음, 2014. 2. 20. 위 연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4. 6.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반납하는 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448,378,780원(연체이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7,935,150원, 농어촌특별세 12,896,750원, 지방교육세 25,793,510원을 합한 296,625,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5,906,120,620원으로 최종 정리되면서 원고는 납부한 세액 중 25,215,160원을 환급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되지 아니하자, 다시 원고는 2015. 4. 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 반납처분신청의 철회신청을 하였고, 2015. 4. 20. 위 신청이 수리되자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4. 2. 20.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5. 5. 12. 원고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미 납부한 세액 278,413,990원(환급가산금 포함)에서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27,084,37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52,889,680원을 충당한 후 그 차액인 198,439,94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그 중 피고가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로 27,084,370원을 충당한 처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에게 취득세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가 0원이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알려 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신고의무의 존재 여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고 납부할 위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내용, 특히 무신고가산세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은 종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에서 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로 변경된 것인데(그 후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어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의 20%'로 변경되었으나,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